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3월 6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I. 수정이유

-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.

II. 주요내용

- “노동학생”을 “일하는 학생”으로 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근로학생”을 “일하는 학생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근로”를 “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7항 중 “근로”를 “일하는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3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1조제2항 중 "근로학생"을 "<u>노동</u>학생"으로 한다.</p> <p>제28조제1항 중 "근로"를 "<u>노동</u>"으로 한다.</p> <p>제29조제7항 중 "근로"를 "<u>노동</u>"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1조제2항 중 "근로학생"을 "<u>일하는</u> 학생"으로 한다.</p> <p>제28조제1항 중 "근로"를 "<u>일하는</u>"으로 한다.</p> <p>제29조제7항 중 "근로"를 "<u>일하는</u>"으로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근로관계상”을 “노동관계상”으로 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근로학생”을 “일하는 학생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근로”를 “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7항 중 “근로”를 “일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(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관계”를 “노동관계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“무기계약근로자””를 ““무기계약노동자””로, “근로계약

을 체결한 근로자”를 “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“기간제근로자””를 ““기간제노동자””로, 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”를 “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“단시간노동자”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근로관계”를 “노동관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근로여건”을 “노동여건”으로 한다.

제5조(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근로자”를 각각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근로자”를 “노동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근로조건”을 “노동조건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